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 일반	○		① 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② 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③ 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④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신청은불가)
	○		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 로 발급
	○		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⑥-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
		○	⑦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)
	○	⑧ 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기타지역 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	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○		※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	-	• 견본주택 비치
		○	① 주민등록표 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 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 존속이 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'전체포함'으로 발급)
		○	② 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배우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
		○	④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•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18세 이상인 경우
		○	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○	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
		○	⑦ 임신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•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⑧ 기본증명서(상세)	자녀	• 출생일자 확인 필요시	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청약 접수가 가능함.

※ 대리인 신청시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서류로 필요하며,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작성시 접수가 가능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바람.

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기록 대조일은 반드시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발급 받으시기바람.

※ 기타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